

#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보고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화성시 박혜명 시의원실

화성 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

(경기 사노위, 금속노조 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회진보연대,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 다문화소통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진보연대, 화성노동인권센터)

☎ 문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화성시 팔탄면 울암리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보고서 목차

0. 들어가며-----	4
1. 화성 팔탄 준산업단지 내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개요-----	7
2. 사건의 수습과정 및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9
1) 팔탄 아미코트 폭발사고와 이후 수습 및 진상조사과정	
2) 사고이후 대책마련의 과정에서도 제도적 대책은 미흡	
3)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한 왜곡되고 무책임한 인식	
4) 형식적이고 사실상 방치수준인 관리감독	
5) 통일적인 관리감독의 부재	
6) 형식적인 전시성 대책	
3. 사건의 사회적 배경과 중대재해 재연가능성의 심각한 현실-----	13
1)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사각지대 현실	
2)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짧은 근속과 잦은 이직	
3) 원하청 관계 및 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불이익 및 중대재해 등의 전가	
4) 교육 - 파견 및 알선 업체에 대한 감독 및 규제 포함	
5) 작업환경측정	
6) 안전진단	
7) 이주노동자의 산재위험과 이주노동 관련 정책 부재	
4. 사건의 원인-----	25
1)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비판	
2) 환경안전보건 인지적이지 못한 인식과 제도	
3) 사후적, 파편적 대응이 초래하는 중대재해의 반복	
4) 종합적인 TFT의 부재	
5) 이주노동자 관련 산재예방 정책과 기업주 교육, 이주노동자 교육의 의무화	
5.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29
1) 환경안전보건 인지적 행정 선언 및 지역차원의 조례 재정	
2) 보호와 예방의 원칙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첨부자료. 화성시 팔탄면 울암리 (주)아미코트 관련 참고자료-----	34
1. 6월 28일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2.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요구 화성시장 면담 결과 보도자료	
3. 고용노동부 중부지청 면담 공문 및 결과	

## 들어가며

2012년 6월 21일.

한적한 시골 산 중턱과 밭. 화물차량들이 다니는 큰 길옆. 이곳은 천상비 장례식장이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울암리 91-19번지 (주)아미코트 공장에서 6월 18일 작업 중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곳이다.  
장례식장에서 들리는 그 흔한 울음소리마저 들리지 않는다. 다들 멍한 모습뿐.....  
영정사진도 없는 장0님, 폭발한 현장에서 일한지 2달이 채 안된 이주노동자다.

폭발사고가 났던 공장으로 향한다. 한적한 시골동네를 지나니 산 중턱에 ‘울암리 팔탄지역공장  
추진위원회’ 명의로 걸린 큼직한 현수막이 보인다.

어! 눈이 왜 이러지, 속도 이상하네.

숨은 메스껍고 울렁거림으로 이어지고, 눈이 따가워지면서 숨이 턱밑에서 멎는다.

이곳은 폭발사고가 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313번길 33-19(울암리 91-19번지) 소재  
(주)아미코트 공장. 2012년 6월 18일 (주)아미코트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노동자 황00(40  
세, 남), 오00(42세, 남), 장0(32세, 남), 김00(30세 남)씨 등 4명은 폭발에 의해 몸이 파열되어  
사망하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대책본부(화성시, 소방서, 경찰서)는 중대재해라고 발표했다.

폭발사고가 난 (주)아미코트 공장주변은 참혹했다. 주변에 있는 차량은 완파 되었고, 공장은  
시커멓게 탄 흔적들, 덩굴러 다니는 화학물질 통과 보온재의 파편들, 앞 뒤 공장의 건물들의  
유리창은 여기저기 파손되었으며, 건물들은 한쪽으로 배불뚝이가 되어 있었다. 조금 있으면 장  
마가 시작 될텐데 온갖가지 걱정이 앞선다. 국과수 직원 등 조사하는 이들이 핀센을 들고 이미  
목숨을 잃은 이들의 몸뚱아리를 찾기 위해 살점을 찾고.....

공장과 공장사이 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이곳은 이미 많은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물론 가건물들이 적지 않다.

옆 공장에서 그리 큰 폭발사고가 났는데도 무표정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을 한다.

무엇을 물어보아도 모른다 한다.

소방차량이 다닐 수도 없고, 구급차가 다닐 수도 없는 골목길이다. 차량하나가 간신히 오고간다.  
공장 옆 식당에서 밥을 먹는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없다.

다른 식당처럼 옹기종기 이야기 나누며 밥을 먹는게 아니라 한쪽만을 응시한 채 밥을 먹는다.

그 한쪽은 TV가 나오는 방향이다.

말도 없다.

그저 밥만 먹는다.

너무 우울하다. 생각이 이 곳 만이 아니라 화성시 곳곳에 있을 아니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

장밀집지역의 현실로 이어지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왜 이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고, 실종되고, 다쳤을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주)아미코트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주) 아미코트 회사는 이동식 디젤버(혼합조)를 이용하여 첨가제와 코팅제를 제조하는 합성수지 제조업체이다. 의견서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 폭발 당시 폭발압력은

200m 떨어진 공장 유리창 파손, 150m 떨어진 곳에서 시신 일부발견, 260m 떨어진 공장내에서 폭발 시 산개한 금속조각 발견

■ 폭발 과압의 영향을 순서로 보면

소음 발생 - 유리창 일부 파손 - 큰 소음 발생 - 유리파열 압력 - 집의 지붕과 유리창의 10% 파손 - 구조물의 가벼운 손상 - 유리창이 부서지며 일부 창틀이 파손 - 주택의 구조물 파손 - 주택의 일부 파손(복구불가능) - 철구조물이 약간 손상 - 주택의 벽과 지붕이 약간 파손 - 비강화콘크리트 벽 파손 - 구조물이 심하게 손상되기 시작 - 주택의 블록이 50%정도 파손 - 건축물의 철구조물이 손상되며 기초에서 이탈 - 지지대가 없는 철제 건축물 또는 기름 저장 탱크 파손 - 공장건물의 파손 - 나무 기둥이 부러짐 - 주택의 완파 - 짐 실은 화물차가 전복 - 두께 20-30 cm의 벽돌벽이 붕괴 - 대형 화물차의 전파 - 대부분의 건축물 전파

■ 재해발생원인

-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미실시
- MSDS 및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미작성

■ 재해예방대책

-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실시
- MSDS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 작업장내 위험물 필요량만 보관
- 운전매뉴얼 작성

재해발생원인은 위험물질 작업시 조치 미실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미작성이다. 이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재해예방대책만 실시하면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고, 다치는 일은 없어 질까?

그렇지 않다.

이거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이거라도 해서 재해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이들에게 꼭 한마디 하

고 싶다. 왜 재해예방대책이 무용지물이 되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는 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내 핑개치는 일상화된 또 다른 폭력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화학물질, 소음, 분진, 임금, 노동시간, 고용형태, 노사관계, 노동조건 등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일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이 위험물질 관련 예방문제만을 문제시해서는 전쟁터같은 일터에서 매년 죽임을 당하는 2,000명이 넘는 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매년 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다치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은 위험물질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듯 생색내기용으로 원인을 찾고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관행이 고착되고 있는지를 뼈 속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

제출된 재해방지대책은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자체, 노동부, 소방서, 사업주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왜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근속연수가 짧은지, 왜 밥먹을 때 한쪽만 쳐다보고 먹는지, 왜 말이 없는지, 왜 그들이 행한 눈으로 출퇴근을 하고 일을 하는지 말이다.

공장은 노동자들의 또 다른 삶의 터전이다. 즐겁고 건강하게 일해야 한다. 그러려면 더 이상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을 포괄하는 재해원인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방지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은 (주)아미코트만의 일이 아니다. 아미코트 폭발사고 이후 화성시에서만 2건의 재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것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2,000명을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고 10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있는가 말이다.

재해방지대책이 실질적이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또 발생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건강과 목숨을 잃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011년 화성지역의 산업재해 재해율은 전국평균보다 1.6배나 높았다. 각별한 실태파악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재해원인 개선을 위해 유관한 이들 모두가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살아갈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웃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 1. 화성 팔탄 준산업단지 내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개요

지난 2012년 6월 18일 화성 팔탄면에 위치한 (주)아미코트 공장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어제와 다른없는 일을 하고 있던 이곳 노동자들의 일상을 '평'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한 순간에 앓아가 버렸다.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군가의 가족이고, 노동자이자, 이 회사의 직원이었던 이들은 한순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주검이 되어버렸다. 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낸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안전불감증과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었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사건이 되었다.

평온한 일상을 누리던 이들의 내일을 빼앗아 버린 (주)아미코트의 폭발사고. 이는 한 사업장의 폭발사고, 한 사업주의 부주의에서 일어난 개인의 과실로 치부해버릴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노동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OECD 가입국가중 산재 사망률 1위, 지난 2011년에도 2,114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산재사망의 수도 상상하기조차 끔직하다. 산재 사망자의 숫자로 모든 것을 설명하긴 어렵겠지만, 그 사망자들의 수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인지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주)아미코트에서 폭발사고가 난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죽임을 내몰고 삶을 파탄내는 산업재해 공화국의 또 다른 폭력인 산업재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가 죽고 나서야 그에 대한 뒷수습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설비와 안전대책이 미비한 사업장을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산재는 뒷수습이 아닌 예방인 것이다.

(주)아미코트 사업장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미 똑같은 공장부지에서 2008년 똑같은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다. 그때도 3명의 생명을 앓아갔다. 똑같은 공장부지에서 2번의 폭발사고. 만약 2008년의 사건의 수습을 잘하고,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똑같은 사고가 2번이나 일어났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이것은 산업재해라고 표현되기 이전에 사고가 난 이후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해내지 못한 명백한 '인재'다. 폭발사고가 일어난 자리에 동종업종의 허가를 해주었다. 왜 그랬냐 물으니, 행정관청에서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노동안전보건 인지적이지 못한 인식과 태도. 자신의 담당이 아니면 제대로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행정관청의 안이함. 노동자들의 죽음 이후 안전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문제 되는 사업장

만 일벌백계로 처벌해 버리는 노동부 등 책임기관들의 산업재해 대응방식. 이러한 문제들이 (주)아미코트 폭발사고로 드러났고, 명백하게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이지 않은가 말이다.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경쓰지 않는 아니 못하는 행정관청의 모습이 노동자들을 오늘도 또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주)아미코트가 위치한 팔탄면 울암리의 공장지대는 아직 공단으로 인정받지 못한 준산단지역이다. 마찌꼬바 공장들이 밀집해있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주)아미코트 사건이전에도 주변의 공장에서 불이 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장이 난립해 있지만 작은 영세사업장이라 제대로 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안전교육은 하고 있는지, 안전기구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담당 공무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자신들의 고충을 알아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사람들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산재사고로 사라지는데 하소연은 책임회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공장을 난립하게 하고, 제대로 된 환경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못하는 화성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자체 혼자만 골머리를 싸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하면서 유관기관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 및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함께 해야만 이 문제들이 해결 될 것이라 믿는다.

(주)아미코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화성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 수 많은 관련 공무원들을 만났다. 물론 흔쾌히 만나주는 곳도 있었지만, 몇 번의 공문을 통해서 간신히 만나주고, 대책위의 이야기에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이러한 행정관청의 안일한 대응과 빠져나가기 식 태도, 자신들의 고충만을 토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산재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 산재는 한 사람의 죽음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 한사람은 그의 가족에게 소중한 구성원일 것이고, 이 사회의 중요한 사람이다. 아니 모든 걸 떠나서 사람이기에 이미 소중한 생명이다. 이 생명이 안타까운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하게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존중받는 것. 그것은 노동인권의 기본이다. 노동인권이 무시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혀 그들의 죽음이 언론에서 한줄 기사로만 취급되는 세상. (주)아미코트의 사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을 이제 없애야 한다.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을 더 이상은 산업재해로 잃지 않도록, 이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길 바라본다.



## 2. 사건의 수습과정 및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 1) 팔탄 아미코트 폭발사고와 이후 수습 및 진상조사과정

○ 2012년 6월 18일

- 사고발생. 화성시 현장지원본부(화성시, 소방서, 경찰서 공조체계) 구성
- 실종자 수색 및 시신 수습
- 피해현장 조사

○ 6월 21일

- 사업주와 유가족 보상 협상
- 화성시 부시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대책실장으로 하는 지원반을 구성
- 보상중재, 장례지 원, 행정지원(외국인 입국지원등) 활동

○ 6월 28일

-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원회와 화성시장 면담진행

○ 7월 2~3일

- 화성시(기업정책과, 환경정책과, 건축과)와 소방서,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공동으로 1차로 팔탄면 울암리의 위험, 유독물 공장 1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7월 3일

- 팔탄폭발사고 대책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의 일차 면담요구하였으나 거부함

○ 7월 6일

- 화성시 (기업정책과, 환경정책과, 건축과)와 소방서, 한국산업안전공단 공동으로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
- 10월 까지 화성시 관내 위험,유독물 취급공장 2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키로 함

○ 7월 6일

- ‘안전한 기업도시 정착’ 울암리 주민감시단 구성

○ 7월 18일

- 화성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화성시 소재 화학제품 제조업체 대표자 간담회 및 화재폭발 재해예방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실시

○ 8월 7일

- 산업안전공단 아미코드 폭발사고 관련 재해조사 의견서 발표
- 아미코드 공장주 입건

○ 8월 8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지정장 면담(경기금속, 민주노총 수원지부, 다산인권센터, 한노보연)

○ 10월 11일

- 고용노동부 중부청 국정감사

2012년 6월 팔탄 아미코드 폭발 사망사건은 우발적 사고로 볼 수 없다. 인재다.

안전, 재해 사고는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으며 심지어 최근 일어난 구미의 불산가스 유출사고의 경우와 같이 일정반경의 노동자와 지역민은 물론이고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6월 18일 발생한 화성시 팔탄면 울암리 소재 (주) 아미코드 폭발사건은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중대 재해사건이다. 문제는 2008년 9월 같은 곳에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폭발사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장소, 같은 업종의 공장에서 유사한 형태의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2008년 9월의 폭발사고 당시에 경각심을 가지고 충분한 안전점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면 최소한 2012년 6월의 비극적인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2012년의 6월의 폭발사고에 대한 수습과정과 대책수립의 양상은 2008년 폭발사고 당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고자체에 대한 수습과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이후에도 같은 형태의 재해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 **2) 사고이후 대책마련의 과정에서도 제도적 대책은 미흡**

2008년의 용신미디어의 폭발사고 이후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용신미디어의 폭발 사망사건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예방대책에 있어서 해당공장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

한 제도적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08년 당시에 제대로 된 사고원인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하였다면 2012년 폭발사고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거나 사고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2년 (주)아미코트의 조사도 거의 같은 수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재삼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용신미디어 폭발 사망사건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한국산업안전공단) 발췌**

■ 재해발생원인

- 안전운전절차의 미준수
- 위험물 이송배관의 결속방법 미흡

■ 재해예방대책

-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접합부의 체결 철저(안전규칙 제284조)
- 작업요령의 작성 (안전규칙 제299조)

< 권장사항 >

-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물질 등의 주입시 연결부위 결합 철저

사고이후 같은 업종의 공장이 다시 들어서는 과정에서 단순히 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큰 어려움 없이 인허가가 이루어 졌으며 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경각심에 기초한 관리감독의 흔적도 없다.

2011년 가스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이후 1차례의 점검이 실시되어 200만원의 과태료와 10일간의 조업정지를 시켰으나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정은 없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인근 공장에서는 악취 등, 위험을 이유로 갈등이 수차례 지속되었음에도 화성시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인지도 하지 못했을 정도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한 왜곡되고 무책임한 인식**

문제는 안전, 재해 사고를 개별적 공장의 문제 또는 작업자의 실수로 한정하며 우발적 사고로 인식하는 현실이다. 그야말로 작업자의 실수와 부주의에서 사고원인을 찾는 안전 불감증이야말로 끔직한 사고의 가장 크고 근원적인 원인이다. 사고의 실질적인 예방시스템은 부실하고 일단 사고가 나면 사고 자체를 수습하기에 급급하고 기껏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공장주들에게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규정을 준수하라고 강조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안전, 재해 사고에서 일차적인 양상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대부분 사고 공장에서의 안전시설 및 대책의 미비 또는 작업자의 실수가 없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재해사고는 완벽한 안전설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전대책을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난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열악한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작업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우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실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며, 유해위험물질 및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를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는 사전 예방 및 점검 매뉴얼과 안전 및 재해 사고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등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 현실에서는 같은 유형의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개별공장과 작업자에게 돌리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주관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해당 지자체의 각별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4) 형식적이고 사실상 방치수준인 관리감독**

한국 산업안전공단에서도 2008년 상반기 용신미디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사고가난 9월의 사고 원인에 대한 사전진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2012년 폭발사고가난 (주)아미코트에 대해서도 작업환경측정 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역시 사고위험에 대한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처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작업환경측정과정과 내용을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했다라면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에 조용한 조치와 관리감독이 실행에 옮겨졌을 수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조사 결과는 기준미달로 안전한 작업장으로 보고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관리 감독할 의사와 역량을 배치할 판단과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5) 통일적인 관리감독의 부재**

위험, 유해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 관리기관이 복잡 다양한 것에 비해 유관기관간의 상호 협조체계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예를 들어 공장설립은 지자체에서, 위험물제조소, 취급소.저장소 관련 허가는 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작업장 안전, 재해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등 통일적인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책임회피 및 떠넘기기가 일상화될 수 있는 시스템 아래에서 중대재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재발방지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통합적이고 일상적인 노력은 아예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2012년 폭발사고 이후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하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실제 보호와 예방에 힘과 지혜를 발휘 할 수 있을지는 얼마나 일상적이고 사전적으로 지원과 관리감독을 전개하느냐에 달려있다.

## 6) 형식적인 전시성 대책

2012년 6월의 폭발사고 이후 화성시는 이전과는 달리 발 빠르게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는 일정하게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전시성, 형식적 대책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울암리 주민감시단의 구성이다.

위험, 유해업소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은 엿보이나 그 대책이라는 것이 사고가 난 팔탄면사무소에서 그것도 리장 3명, 공단 사업주 3명, 대성저수지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주민감시단을 만들고는 일상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울암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 전역 나아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기구로 일상적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등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관리감독 역할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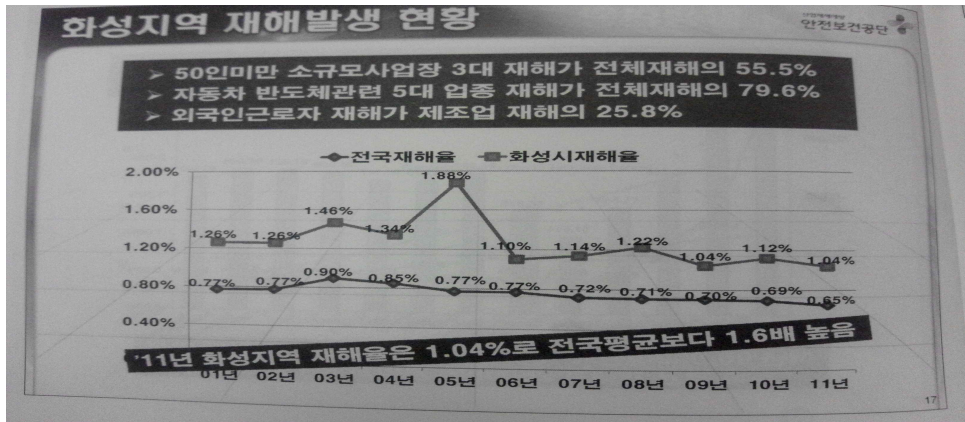
심지어 주민감시단이 감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감시활동 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감시단을 구성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사고예방에 대한 진실하고 책임있는 대책이라고 보여지기 보다는 면피용, 언론 플레이 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 3. 사건의 사회적 배경과 중대재해 재연가능성의 심각한 현실

### 1)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사각지대 현실

#### ■ 화성지역 재해발생을 전국평균보다 높다

2011년 화성지역 재해율은 1.04%로 전국 재해율 0.65%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화성지역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난립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난 2005년의 경우 전국평균 0.77%보다 2.5배 높은 1.88%를 보이기도 했다. 아래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의 2012년 교육자료를 보라.



■ 소규모 영세사업장일 수록 재해율과 사망률이 높다.

구 분	2012. 1 ~ 06		2011. 1 ~ 06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합 계	44,726	1,069	44,396	1,034
50인미만	36,314	662	36,302	636
5인 미만	14,263	260	14,904	264
5인 ~ 9인	7,588	131	7,518	109
10 ~ 15인	4,846	81	4,908	80
16 ~ 29인	5,800	111	5,476	101
30 ~ 49인	3,817	79	3,496	82
50인 이상	8,412	407	8,094	398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자료

위의 표에 의하면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재해 사고에서 전체 재해자의 81.2%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31.9%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재해 사망자 역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61.9%가 발생했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24.3%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년도인 2011년의 같은 기간에도 그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영세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은 실질적 지원과 일상적인 관리감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일수록 재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부상 및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고,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성시 공장등록 규모별 현황(2012.03.31현재)

구분	계	대기업 (300인이상)	중기업 (50인이상)	소기업 (50인미만)	비고
기업체수	7,258	16	451	6,791	

화성시 산업단지 공장 입주 현황

산업 단지	발안	화남 일반	장안1	장안2	화성 일반	향남 제약	마도 일반	전곡 해양	화성 동탄	아산	계
입주 업체수	211	12	12	2	1 삼성	37	115	미분양	미분양	1 기아	391
기준년	2010	2010	2010	2010	현재		2010				

화성시 준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단지내 입주 업체 현황

구분	업체수
양감(양감면 사창리)	덕신이엔지(주)외 7개업체
북양(북양동)	계명산업(주)외 30개업체
구장(팔탄면 구장리)	울브린 코리아(주)외 13개업체
하저(팔탄면 하저리)	동아정밀외 12개업체
덕우(팔탄면 덕우리)	씨엠테크 외 20개업체
합계	87개 업체

위의 표에 따르면 화성시 전체 공장등록 기업체수 7,258개중 산업단지 또는 준 산업 단지의 형태로 관리가 용이한 기업체는 모두 합해도 478개 업체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는 화성시 전역에 난립해 있고 그중 대부분은 50인미만의 영세사업장이다. 실질적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업주의 책임 못지않게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지청이나 화성시 그 어느 곳에서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들 영세사업장이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업체사장 혹은 작업자에게 미루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징벌주의적인 수시점검과 형식적이고 책상에서 하는 서류중심의 현장관리 감독으로는 난립한 중소기업장의 열악한 안전보건 실태를 개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사업장과 유해위험요인 큰 사업장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을 일상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 2)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짧은 근속과 잦은 이직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2년 7월 20일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관련 자료를 보면, (주)아미코트에 고용되었던 이들의 전체 근속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출생년도	입사일	퇴사일	근속기간	출생년도	입사일	퇴사일	근속기간
1964	2004.02.11.	2011.08.10.	7.5년	1975	2004.02.10.	2005.03.23.	1.5개월
1965	2008.09.11	2009.08.10.	11개월	1977	2004.03.02.	2004.11.22.	8.5개월
1969	2011.05.02.	2012.06.19.	13개월/망	1980	2012.01.09.		5개월/상
1969	2008.11.01.	2010.06.10.	19개월	1980	2012.05.03.	2012.06.19.	1.5개월/망
1970	2004.03.02.		8.3년/상	1981	2009.12.21.	2012.06.19.	2.5년/망
1970	2006.02.13		6.3년/상	1981	2005.02.11.	2007.03.31.	2.1년
1971	2012.04.17.	2012.06.19.	2개월/망	1983	2012.04.10.	2012.04.12.	2일
1971	2004.03.02.	2005.01.01.	10개월	1983	2009.06.01.	2010.09.28.	1.3년
1972	2012.04.10.		2개월/상	1986	2011.09.10.	2012.03.09.	6개월
1972	2012.06.01.		0.5개월/상	1987	2009.12.14.	2012.01.07.	2.1년
1974	2012.05.16.		1개월/상	1988	2012.05.01.		1.5개월/상
1975	2005.08.18.		6.8년/상				

5년 이상의 근속을 하고 있는 이들 4명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짧게는 2일부터 최대 2.5년을 넘지 않는 근속기간임을 알 수 있다. 2012년 6월 18일 폭발사고 당시 대표 이사를 제외하고 근무 중이던 12명 전부가 재해를 당하였는 바, 폭발당시 근무자들의 근속기간은 15일 1명, 1개월 1명, 1.5개월 2명, 2개월 2명, 5개월 1명, 13개월 1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근속이 긴 4명 이외에는 실제 업무에 적응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입사 이전 혹은 입사 이후에 안전보건 교육 및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은 사실상 제대로 받기 어려웠거나 못 받았을 것이라 추정된다. 실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는 관할부서인 고용노동부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폭발사고 당시 (주)아미코트에 재직 중이던 사람들의 2012년 5월 현재 급여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기본급이 1,000,000원부터 2,200,000원으로 생산업무를 하는 이들 대부분은 1,000,000원에서 1,200,0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더구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력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근속연수가 길어야 2년 내외로 매우 짧고 잦은 이직은 저임금뿐 아니라 상존하는 유해위험 요인 등에 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지독한 냄새는 주변공장의 민원에 의한 화성시청 조사를 통해 2011년 5월 10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한 예이다. 실제 (주)아미코트에서 쓴 2011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보면, 냄새만이 아니라 보다 각별하고 일상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에 (주)아미코트에서 사용한 톨루엔 월 10톤, 에틸아세테이트 월 30톤, 이소프로필알콜 월 1.5톤, 메틸에틸케톤 월 2톤 등은 중추신경독성이 있고 폐, 간, 심장, 신장 등에 영향을 미쳐 환각증세와 구토와 두통을 유발하는 유해성을 물론이고 폭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였다. 국소배기장치, 공정밀폐환기장치, 방폭설비, 보호구, 안전보건 교육, 공정 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심각한 유해위험요인은 사업주는 물론이고 해당 관할 부서인 고용노동부로부터도 형식적 관리대상에 조차 끼지 못한 채 고스란히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상존해왔고, 이것이 짧은 근속과 잦은 이직으로 이어졌고, 이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져서, 끔직한 폭발사고라는 중대재해로 드러난 것이다.

짧은 근속과 잦은 이직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파견 및 취업알선업체에 구인을 의뢰하는 것이 다반사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파악한 관할 파견 및 취업 알선업체 현황을 보면 총 59업체이고, 관할 국외 유료 직업소개소는 2개 업체이다. 그러나 (주)아미코트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지청 관할지역만이 아니라 안산, 평택안성 등 수도권 파견 및 취업알선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큰 사업장은 물론이고 취업이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과 동시에 직무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는 것을 지역차원에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는 노동자 가운데 1년 미만 초단기 근속자의 비중이 37.1%이고, 2010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5년으로 OECD 소속국 가운데 가장 낮았고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아미코트의 경우는 물론이고 적지않은 사업장의 현실이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이주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실질적이고 일상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같은 장소에서 2008년에 있어났던 폭발사고 사례를 돌아보면 더욱 확실하다. 2012년 6월 18일 폭발사고가 있었던 (주)아미코트 소재지인 화성시 팔탄면 울암리 91-19 공장터는 (주)용신미디어가 있었던 곳으로 2008년 9월 9일 10시 30분경 있었던 폭발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화상을 입고 그중에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조사번호 2008-22-11-020)에 의하면 총 8명의 노동자중 재해를 당한 6명의 연령은 48년생, 50년생, 53년생, 56년생, 66년생, 68년생으로 40세가 넘는 고령의 노동자였으며, 동종경력이 2월 1명, 2년2월 2명, 2년 3월 1명, 3년 1명, 8년 1명이였다. 2008년 재해 발생경위가 잉크제조용 반응기를 세척 후 세척용제(잉크용제 MISCOSOL 2831)를 Flexible Hose로 연결하여 혼합기로 이송 중 호스연결부위가 탈락되면서 용제가 누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공장내부에 있던 48년생의 노동자 1명과 재해를 입은 5명의 노동자는 공장밖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 공장 내에 있던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정상적인

세척작업 절차(이동용 용기에 담긴 잉크용제를 반응기에 연결 ⇒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잉크용제를 반응기에 투입 ⇒ 임페러를 가동하여 교반함으로써 세척작업 실시 ⇒ 이동용 용기에 잉크용제를 회수)를 지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실제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대피 및 대응조치가 사실상 없었거나 실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훈련이 부재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입사시 유해 위험업무에 대한 교육과 일상적인 안전조치 및 교육이 없거나 매우 부실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2008년 폭발사고 당시 보다 2012년 폭발사고가 다른 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젊고 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보다 안전조치상의 주의와 교육 그리고 훈련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함께 실질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도관리감독이 절실했다고 할 수 있다.

### 3) 원하청 관계 및 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불이익 및 중대재해 등의 전가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장이 2012년 7월 18일 화재폭발 재해예방 특별안전보건교육에서 사용한 교육 자료를 보면 화성지역 재해발생 현황관련 슬라이드에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3대재해가 전체 재해의 55.5%이고, 자동차와 반도체관련 5대 업종 재해가 전체재해의 79.8%이며, 이주노동자 재해가 제조업 재해의 25.8%라고 밝힌 바 있다. 2011년 화성지역 재해율은 1.04%로 전국평균 0.65%보다 1.6배 높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매년 90,000여명의 재해자와 2,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하루에 평균 재해자가 260여명이고 사망자가 6명꼴에 이른다. 실제 노동재해의 규모는 공식통계의 최소 30배에 이른다는 판단과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공식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전쟁같은 노동이 OECD 의장국이니 선진국진입이니 하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1년 화성지역의 재해율이 전국평균보다 1.6배나 높다는 것은 중소기업사업장이 많고 난립하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의 완성에 필요한 하청 또는 도급관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산시스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화성지역 재해율은 전국평균 재해율 0.77%보다 2.44배 높은 1.88%였다.

현재 한국의 사망만인율은 OECD평균에 비해 3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사고와 질병 전체를 볼 때는 선진외국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직업성 손상률만 보면 OECD 평균에 1/5 수준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재해율은 낮는데, 중대재해 또는 사망재해만 높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사망재해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예고하는 위험한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해야 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듣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 보다는 사망재해가 아닌 일반 재해의 경우 대부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떻게 일 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직업병이 아닌 단지 사고만으로 일터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단 말인가? 선진 외국에 비해 수십 배가 넘는 사망위험도를 갖고 있고 OECD국가에서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산재가 만연한 산재공화국이라는 사실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가장 극단적인 위험의 공간인 전쟁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정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 당사자의 고통과 저항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랄 할 수 있을까? 기업주와 정부의 책임방기아래 조장된 일상적인 재앙인 산업재해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누가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건설업은 물론이고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동반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하청의 하청 관계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원청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소용비용을 단가책정에 반영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전쟁같은 노동을 최소한이나마 개선해 나갈 수 있고 안전보건문제가 좀 더 열악한 기업과 노동자에게로 전가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재해에 대해 사후약방문식 대응, 형식적이고 기술적 대응, 일회적 보상 중심의 대응을 넘어 보호와 예방을 선언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 나갈 힘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아미코트의 경우처럼 하청이나 도급관계는 아니고 생산품을 직접 사회에 팔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고 그에 따른 안전보건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정부차원에서 공기업화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를 생산토록 하면서, 관련 유해위험 요인을 정부차원에서 관리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그 어떤 방안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노동재해 관련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노동재해를 총괄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지위와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점, 둘째 고용노동부 내부에서조차 정책순위가 높지않아 보호와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지방고용노동청의 담당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실상 관리 감독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넷째 산업 안전보건 업무 관련 법과 시스템의 중복 및 난맥상, 다섯째 징벌주의적 접근과 사후약방문식의 일회적 대응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화성지역의 경우 중소영세사업장과 특히 유해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만이라도 빠짐없이 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더 이상 끔직한 사고를 막거나 줄일 보호예방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 **4) 교육 - 파견 및 알선 업체에 대한 감독 및 규제 포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2012-22-11-019)에 서술되어 있듯이, 재해발

생 원인 중에 하나로 MSDS 및 특별안전교육 미실시를 지적하였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는 물질의 유해위험성,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여 안전하게 취급,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리튬과 염소삼과 같은 물질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해발생 원인으로 꼽았다. 그만큼 유해위험 물질과 상황에 대한 교육과 일상적 대책마련 및 시행은 법을 지키다는 측면보다 실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업주, 노동자, 관할 지자체, 관할 노동청 등 어떤 누구도 어떤 교육이 언제 무슨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문제를 되거나 고발이 있어야 그나마 대응을 하는 수준의 열악한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징벌주의적 법과 규정을 운운하기 보다는 실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역량투여가 시급하다. 우선 안전보건 교육실태 파악부터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다.

실제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안전보건 관련 법과 규정을 비용부담으로 여기는 현실에서 투자라는 인식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인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측정과 검진 혹은 보건대행 기관 등을 통해 형식적 교육을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일 정도로 산안법상의 안전보건 교육의무는 유명무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직후 업무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업무교육 내용 중에 유해 위험 내용 및 안전보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고용노동부 주관아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교육을 지역차원에서 업종별로 공식적으로 실시할 수 인력확보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을 것이다.

(주)아미코트 사업장처럼 짧은 근속과 잦은 이직이 심한 사업장일수록 일할 사람을 구할 때 파견 및 취업알선 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심한데, 중소기업사업장에 대한 취업알선시 취업할 사업장의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과 안전보건 교육 이수를 법적의무로 규정할 경우, 교육참여와 효과역시 취업후 에 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견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를 포함하여 안전보건 관리자는 물론이고 특히 일하는 이들이 MSDS 혹은 GHS와 방폭설비 및 위험정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상적으로도 정례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조치 등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관할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2012년 7월 23일 현재, 중소기업 건설현장 소장 특별안전교육,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사고사망재해 취약사업장 재발방지 등 올해 총 11회의 안전보건교육(아래 표 참조)을 실시했다. 교육대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사업주 혹은 관리감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7월 18일 교육은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이후

기획된 교육으로 사건이 일어나야 대응을 하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3월 20일 화학물 질취급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하고, 실태점검을 사전에 일상적으로 하였다면 6월 18일에 폭발사고 막을 수 있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식과 대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실제 사업장에 맡겨서는 실행에 옮기기 불가능한 중소기업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비군 혹은 민방위 교육과 같이 지역차원의 집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참여와 현장개선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사구시적인 접근을 현실로 옮겨야 한다.

연번	일자	교육명	참석자 수
1	2012.02.24.	중소규모 건설현장 소장 특별안전 교육	114
2	2012.03.20.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35
3	2012.04.02.	사고사망재해 재발방지 교육	26
4	2012.04.17.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특별교육	240
5	2012.05.08.	중소규모 건설현장 소장 특별안전 교육	52
6	2012.05.08.	질식 중독 재해 예방 특별교육	33
7	2012.05.10.	질식 중독 재해 예방 특별교육	65
8	2012.06.19.	도소매업 안전업무 담당자 특별교육	12
9	2012.06.25.	운수창고통신업 사업장 사업주 교육	18
10	2012.07.04.	서비스업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	219
11	2012.07.18.	화재폭발사고 예방 사업주 특별교육	176

## 5) 작업환경측정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같은 소재지의 2008년 9월 9일 폭발사고가 있었던 (주)용신미 디어와 2012년 6월 18일 폭발사고 있었던 (주)아미코트에 대해 두 사업장 모두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하였고, 측정결과도 노출기준 미만이어서 지방관청에서 사업장에 대해 별도 조치한 바 없었다고 했다. (주)아미코트는 폭발사고 이전까지 무재해 및 작업 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진단, 직업병예방 지도 등 관리감독 대상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책상머리에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양상이며, 산업재해에 대한 원인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결과주의적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폭발사고 이후 유사업종 31개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1차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였고, 8월 13~14일에 두차례 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불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접착제 및 젤라틴제조업체 경기지청 관내 55개소와 평택지청 관내 18개소 등 73개 사업장에 대해서 2012년 7월 9일부터 20일까지 지자체, 소방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 및 지원을 통해 법적 안전보건조치사항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대책 기술지원과 공정별 화재폭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점검과 기술지원이 실제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사실 점검과 지원이 일회적이고 생색내기용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실질적이고 일

상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그에 앞서 7월 2일부터 3일까지 화성시(환경정책과, 기업정책과, 건축과), 화성소방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총 15명 2개조로 안전한 기업도시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점검결과 보고에서 특별점검과 기술지원한 내용 등을 살펴보자.

팔탄면 울암리 소재 위험물취급 공장 5곳, 유독물 취급 공장 3곳, 위험물취급 비제조 공장 1곳, 유독물 취급 비제조공장 1곳 등 총 10곳을 유관기관이 합동점검을 하였다. 점검 결과보고중 환경기계공업, 데크노바이오, 대흥특수화학 등 세 개의 사업자의 경우 지적한 내용은 중대재해 발생의 가능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지적한 내용을 무작위로 정리하면, 산소+LPG 가스절단기 역화방지 미설치, 저장탱크 옆 세안세정장치 사용불가,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소서고히 저장탱크 내용물 미표시, 안전난간 미설치, 보호장갑 미인정품 사용, 폐산 폐알칼리 중화작업 전 사용물질의 성분미확인, 방폭지역 구분도 미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확보, 설비 및 배관 배치도 미작성, 방폭지역에서 콘센트 및 펌프 등 비방폭 전기기기 미사용, 탱크 다이크 미설치, 탱크 등에 정전기 방지 접지 미실시, 대기 벤트라인 화염방지 미설치, 배관내용물 미표시, 공정안전보고서(PSM) 미제출 등은 물론이고, 건축물 사용용도 상이 및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 불법건축까지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 현실이었다. 현실은 이러한데도 해당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의 관리사업장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작업환경측정에서 기준미달이라는 측정기관의 보고서 때문이었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미연한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전면적으로 특별감독을 통해 실질적인 작업환경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이후에 진행한 점검과 기술지원과 같은 활동이 일상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6) 안전진단

산업안전보건공단차원에서 중소 화학공장의 안전관리 특성으로 정리한 공정안전관리 비적용과 규제완화 문제, 반자동화 또는 수동방식으로 공정운전상 위험성 즉시 인지 곤란한 문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한 잦은 공정변경에 따른 높은 위험성 문제, 전담부서 미설치와 안전관리인력 전무, 잦은 이직에 따른 숙련공 확보 곤란 문제, 생산 불가시에만 설비보수할 정도로 잦은 고장과 작업환경 열악한 문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은 문제, 작업조건과 작업환경 취약문제,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한 잦은 이직 문제 등을 볼 때, 전면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전면적인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절실하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인력문제의 고충을 이유로 사고가 나고 뉴스가 되어야 그것도 근원적인 원인진단과 재발방지 대책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해결과보고와 재발방지 대책을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력으로 불가능하다면 지역차원 나아가 정부차원에서라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최소한 공정위험성 평가만이라도 해당사업장 전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실질적인 예방조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해당 사업장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권역으로 있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기술지원팀을 지역 혹은 지구 차원으로 확대개편 필요성 있을 것이다. 해당사업주만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 관행을 벗고 안전진단결과 혹은 공정위험성 평가에 준하여 비상조치계획(사고발생시 응급 조치, 대피장소 및 대피절차,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변원 등 공공 비상서비스 기관과의 역할분담, 잠재적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과의 연락 및 구조절차 등을 포함) 수립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예컨대 유해위험 사업장 특히 폭발가능성이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해 방폭설비를 대대적으로 무상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 7) 이주노동자의 산재위험과 이주노동과 관련 정책부재

2011년 기준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수는 58만 6천명이다. 16개 MOU 체결 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서 노동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이 중 경기도에 등록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2011년 말 20.9000명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안산과 화성등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 많아 이주노동자는 끊임없이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다.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이번 폭발사고가 난 화성 지역은 경기지역 중 이주노동자 비율이 2번째로 높은 곳으로 현재 2만3천명 정도이다. 화성시의 이주노동자 수가 전국 상위안에 속해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화성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이주노동자 관련 처우 및 정책이 전국 상위에 속해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사망자 장0씨 역시 이주노동자로서 일한지 2달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공장에서 냄새가 너무 난다. 냄새가 새 나갈까봐 문도 못 열게 하고, 선풍기도 못 틀게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가족들과 전화를 통해 이야기 했다고 한다.

장0씨가 제대로 된 안전보건 교육을 받았더라면, 현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질이나, 안전수칙에 대해 좀 더 알았더라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 장0씨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안전교육, 작업 시 사용하고 있는 물질, 보호장구 등에 대해 알지 못한채 해마다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주)아미코트 사고에서 시사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문

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산업안전교육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현장에서 매월 작업시간 중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국내의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해외투자법인 기술연수생, 산업기술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왔으며 이들 모두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3D업종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 신분의 외국인들은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박탈된 채 학생의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 이후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 역시 산업연수생 신분의 이주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3D업종에서 최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산업재해의 현장에서 한국의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재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특별 관리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상당수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추방대상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폭행, 비인격적 대우, 인격모독 등 각종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결국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언어적 이질감과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법적인 신분 그 자체만으로도 정당한 권리를 유보당한 채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산재의 위험과 각종 질병, 질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 배부분이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3D업종의 일이기 때문에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로 질병 발생의 가능성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나 의사소통의 불편으로 인해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여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들도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산재사고는 특성상 미숙련 상태의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재해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각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주 노동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산업재해로 피해를 당하는 이주노동자의 수 또한 늘고 있다. 경미한 부상이면 다행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천금같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기사 한줄로만 '00에서 사고로 000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 사망' 이라는 내용을 접한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결코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 채 산업 현장에서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신문기사 한 줄로 이 나라에 와서 죽어간 이들의 소식을 타인의 이야기처럼 접하는 것이 아



나라 그들의 목숨도 소중한 생명임을 다시금 깨닫고,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사건의 원인

### 1)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에 대한 비판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주)아미코트 폭발사고에 대한 재해조사 의견서(2012-22-11-019)를 보면 재해원인으로 첫째,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 조치 미 실시 둘째, MSDS 및 특별안전교육 미 실시 셋째,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미작성으로 지적하였다. 재해예방대책으로는 첫째,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실시 둘째, MSDS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셋째,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을 재시하였다.

재해조사 의견서는 참 안이하다. 실제 재해원인에 대한 고용, 임금, 작업환경, 노동시간, 도급관계, 규모, 지불능력 및 예방조치 역량 등 노동현실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접근은 물론이고 총체적인 분석이 없는 요식적이고 기술적인 대체적인 원인진단과 예방대책이다. 실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없다. 이런 의견서로는 재발방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면 보호예방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으며,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안전보건 시스템과 현실을 숨기면서 좀 주의를 기우리면 해결될 것처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주 및 작업자의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에 치우친 원인진단의 일면성은 징벌적 인식과 정부 및 사업주의 책임소재를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당사자의 진술 등 질적조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발방지 나아가 예방을 현실로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해조사 의견서일 따름이다.

특히 노동안전보건 주무 책임기관인 고용노동부는 폭발사고 이후만이 아니라 폭발사고 이전에 일상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 일상적인 노동을 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이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실질적인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구체적인 현실과 과제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환경안전보건 인지적이지 못한 인식과 제도

7월 18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의 지도원장 교육중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 및 정부 나아가 사회적 인식이 비용 혹은 규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안전보건의 일차적인 책임주체들인 정

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사업주 등이 사후약방문 그것도 사고수습과 쟁점화회 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보건 권리를 누려야 할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향유하기 보다는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화성시에서 ‘안전한 기업도시 정착’을 위한 울암리 주민감시단을 꾸리는 코미디같지 않은 코미디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안전한 기업도시정착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일터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최근 구미 불산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 및 고용노동부의 태도와 대처는 전국 곳곳에서 현재진행중이다. 팔탄 (준)아미코트 폭발사고 사례는 그 일부이자 전부일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인력과 업무시스템의 문제점 핵심은 바로 안전보건 중심의 인식이 미흡하고 사실상 관리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력부족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안전보건 행정선언을 실질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 및 예산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인 일터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예로 고용노동부의 업무중심은 노동보다는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부문 업무를 타 정부부처와 통폐합을 하면서 노동안전보건을 주무하는 노동안전보건청의 신설하면서 그래도 부족할 수 있는 집행력을 노동자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사후적, 파편적 대응이 초래하는 중대재해의 반복**

2012년 6월 18일 (주) 아미코트 현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는 2008년 9월9일에도 폭발사고가 있었던 곳으로, 2008년 폭발사고 당시 진상보고서 내용을 보면 끔찍한 재앙이 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2012년 폭발사고 보고서역시 거의 똑같다. 다른 것이 있다면 MSDS 및 특별안전교육 문제를 추가했다는 것 이외에는 거의 같은 맥락이다.

두 차례 폭발사고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사후적 기술적 파편적 대응은 죽음을 경시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나마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였다면 사고 현장의 재발방지는 물론이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그에 준한 대응조치가 따라야 했었다.

2008년 폭발사고와 달리 2012년 폭발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응과정에서 사업주 교육, 실태조사, 유사사업장 점검 등 일련의 진전이 있긴 하지만, 재발방지의 구체적인 보호예방의 역량과 시스템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2012년 폭발사고 이후 진행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은 일상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주요활동이다. 주요한 활동이 현실이 되지 못하면 폭발 등 안전 및 재해 사고 문제는 그대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유해 위험 사업장 및 중소영세사업장 나아가 전체 사업장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가 절실하며, 실태조사에 조응한 종합적 대책시스템 구축을 현실로 만들 때 전쟁같은 노동으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유해 위험사업장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해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방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수립에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와 해당지자체가 힘을 쏟아야 한다. 점검에 그치고 실질적 예방조치는 중소영세 사업주 혹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노동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아니라 위험요소 중심의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 도급관계, 임금, 노동시간, 고용, 작업환경 등 노동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4) 종합적인 TFT의 부재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소위 관할 또는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규정 중심의 대응은 밥그릇 싸움으로 혹은 복지부동의 케케묵은 공무원 사회의 그릇된 관행으로 이해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사고 대책팀은 사고 수습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팀 가동이 전부였다. 실질적 조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산하 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술적 사고 원인 조사와 교육의뢰, 유사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기술지도가 다였다.

실제로 진상조사를 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고용노동부 모든 지청의 현실이다. 경기도청의 경우 산재예방과 담당은 7명으로 한 명당 만개가량의 사업장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징벌적-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을 통해 1%가까이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수준을 넘기 어렵고, 탁상행정이라는 오명을 실제로 벗기 어렵다. 산재예방과의 인력문제는 현실이다. 그러나 인력문제를 규정하는 행안부나 지경부의 법 혹은 규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고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이고 도리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책을 보호와 예방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들(지자체, 고용노동부 지청, 환경부, 소방서 등)과 정당, 사업주, 지역노사정위원회, 노동조합과 노동자,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TFT 구성을 통해 정례적이고 일상적인 보호예방활동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원인을 전제하거나 포괄한 종합적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적 의견서를 일부로 자리매김해야 제대로된 원인진단과 재발방지

실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5) 이주노동자 관련 산재예방 정책과 기업주 교육, 이주노동자 교육의 의무화

이번 (주)아미코트 폭발사고는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산업재해이다. 더 이상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우선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년 전 사고에서 제대로 된 사후 대책만 있었다라면 또 다른 인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노동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내국인 노동자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노동환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산업현장에서 죽어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 안전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코리안 드림이 산업재해의 비참함으로 깨져나갈 것이 아니라, (주)아미코트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문제이다.

### ■ 이주노동자 실태 및 안전보건 교육 진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수는 전국적으로 최대이다. 경기지역 안에서 화성은 안산에 이어 2번째로 이주노동자의 수가 많은 곳이다. 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어떠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작업환경은 어떠한지, 제대로 된 안전 장비를 지급받고, 제대로 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야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수위에서만 이주노동자의 수와 작업장 수만 파악한다면 이주 노동자 정책에 대한 진전이 되지 않는다. 현재 화성 어느 사업장에서 어떠한 조건하에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시급하다. 또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현장에서 안전보건 교육은 받고 있는지,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그 이후 이주노동자 교육,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이주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

산업재해 피해를 받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3분의 1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 즉, 미숙련 상태의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재해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각별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취업 초기에 산업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화성시는 이런 교육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프레스, CNC, 사출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심각한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체 산업재해 피해자의 40%가 이 업종들에서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신체부위가 절단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들의 3분의 2가 프레스를 다루던

중 사고를 당한다. 이렇듯 세 업종에서 안전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은 사업장에서 안전장치 설치의무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노동부의 안전관리 및 근로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이주 노동자 산재 및 노동안전에 대한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

더욱이 작업 중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처리된 이들 중 3분의 2가 민간 상담소의 지원을 통해 처리되고 있기에 인권단체 외에는 이들이 산재사고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사업장 안전에 대해 근로감독의 권한이 있는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역할이 재검토되어 이주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보호장치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재해 신고절차, 또는 한국의 치료체계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산재를 당했을 경우 회사측이 제공하는 치료를 받는 것 외에 치료내용과 보상에 대한 정보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질환이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재, 질병으로 인해 큰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치료의 과정에서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이 이 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자 하는 것임에 분명하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이들이 가진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 60만 이주노동자들이 이 법의 적용을 통해 노동자로서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겠다.

## **5.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 **1) 환경안전보건 인지적 행정 선언 및 지역차원의 조례 제정**

지자체 혹은 정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환경안전보건 인지적 행정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환경, 안전, 보건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냄새나는 일터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산재공화국의 오명은 재해 숫자와 재해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드러날 때, 유의미하고 실제 실현가능할 것이다.

환경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과 환경 존중과'의 행정풍토를 조성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구환경보전 및 사회구성원들 특히 일하는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환경안전보건 초일류 행정을 추구한다.

1. 환경안전보건을 행정의 핵심 기본요소로 인식하고, 능동적인 환경안전보건 활동의 정착을 도모한다.

1. 지역내 생산품의 기획, 설계, 생산, 판매, 정비, 폐기 등 모든 단계에서 환경안전보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환경안전보건 제반 법규와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보다 수준 높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1. 지역차원에서 사업장내 잠재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투자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을 쏟는다.

1. 지역사회차원에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표함으로써 환경안전보건 행정을 현실화시키고 진전시키는데 앞장선다.

선언을 실질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실질적 집행을 위해 지역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차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다. 이러한 시도가 마련 사람이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고 더 나아가 일하다 다치고 죽지 않을 일터를 만듦으로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선언이 유명무실하거나 생색내기 용이 아니게 하려면 실제 지역차원에서 지역 환경안전보건 지킴이 제도를 조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2) 보호와 예방의 원칙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세계보건기구 WHO는 일하는 이들의 건강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권리와 그/그녀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는 일하는 이들이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한 국제적 선언이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행복한 상태여야 한다 (WHO, 1995)는 의미이고, 이는 일하는 이들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노동자가 누릴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의 원칙으로 첫째 보호예방의 원칙, 둘째 건강증진의 원칙, 셋째 적응의 원칙, 넷째 치료 재활의 원칙, 다섯째 일차 의료의 원칙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한민국역시 일하는 이들의 안전보건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보호예방과 치료재활 및 보상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요한 보호예방을 위한 산안법은 유명무실하며, 중소기업사업장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인 현실을 부정하는 이들은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료들은 법타령, 인력타령 뿐이다.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보호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하는 이들이 건강과 생명 그리고 지역환경을 지키는 모범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사업장과 유해위험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안전보건 지원과 관리감독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통해 안전보건 유해 위험요인을 예방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지역차원의 환경안전보건 지킴이들이 골간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 시혜적인 권리가 아니라 향유해야 할 권리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관련 산재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실질적인 보호예방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산재보험노동안전보건청의 신설을 통해 노동안전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과 재정 확충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 예컨대, 사업주들의 낸 기금이 외에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수인 15조~20조 가량의 예산을 정부책임아래 투여하는 것을 통해 능동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외에도 실태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통한 재해별 위험 지도 만들기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화성시 관내의 공장 밀집지역은 물론이고, 전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규모별, 재해별 노동안전보건 지도를 만들어 보호예방의 원칙을 현실로 만들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폭발위험 사업장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 따른 대책마련 및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후 화학업종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서 해당 행정기관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지역 환경안전보건 지킴이들이 소속과 직함 보다는 지역차원에서 환경안전보건 의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유해하고 위험한 요소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모범을 만들어 가야 한다. 화성시 뿐만 아니라 최소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할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명실상부한 환경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기초를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실태조사에 입각하여 위험 유해 요인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활동 일상화와 로

드맵 구축으로 재해예방은 물론이고 재해발생시 원칙적으로 견지해야 할 사회적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면, 재해 걱정없거나 최소화 한 일터와 세상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관련자료 모음

##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6월 18일 오전 11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일하던 공장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 한 것이다. 화성시 팔탄면 울암리에 위치한 회사의 이름은 (주)아미코트. 사고로 인해 4명의 노동자는 사망했고, 다수의 노동자가 다쳤다. 화성시는 폭발사고 대책반을 구성하여, 사건현장을 수습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화성시 부서는 기업정책과, 재난관리과, 여성가족과였다. 노동자들이 형태도 없이 죽었는데 정작 노동관련 부서와 엄청난 폭발로 유독가스가 퍼지고 있는데도 환경관련 부서가 대책반에 없다. 화성시가 사건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환영하지만, 다만 '사건'만을 수습할 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가 우려스러운 점은 이것이다.

화성시에는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만 1만여개가 있다. 전국 최대다수다. (주)아미코트도 팔탄공단에 위치한 작은 공장이었다. 이 공장은 3년전에도 폭발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적이 있다. 불과 1년반전에도 인근공장에서 불이 난 적이있었다. 그런데 화성시에는 노동자들을 담당하고 노동환경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없다. 화성시 관할 노동사무소는 수원에 있어, 화성시 노동자들에게 너무 멀다.

이번 폭발 사고가 일어난 (주)아미코트 주변의 회사 유리창과 건물들은 성한 곳이 없었다. 수 많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다보니 한 공장에서 사고가 나도 다른 공장에 피해가 간다. 제대로 된 안전점검과 환경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아미코트는 자가측정기록미작성과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이라는 명목으로 2011년 5월 과태료와 조업정지 10일이라는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에 또다시 이러한 사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주변 공장과 공단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재발방지 계획이 절실하다.

이번 사고를 단지 우발적 사건사고로 바라 봐서는 안된다. 공단안전점검 관리대책과 노동자 업무환경이 어떠했는지,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야한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다시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다. 관리 감독 기관들은 현장 수습을 다했다고, 사건을 종료 시킬 것이 아니라 왜 폭발했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화성팔탄 폭발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폭발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 하나. 화성시의 공단 인허가 과정과 기준을 공개하라!
- 하나. 화성시 공단의 노동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하나. 화성시 공단의 노동안전점검 시스템을 일상화하고, 제도화 하라!
- 하나. 화성시 공단 환경점검을 일상화하라!
- 하나. 사고자, 주변 노동자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를 실시하라!
- 하나. 화성시는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의 보상에 적극 협조하라!

2012년 6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자료 2 -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요구 화성시장 면담 결과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다산인권센터 (담당 : 안은정 010-5608-0288 / 031-213-2105 humandasan@gmail.com )

제 목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요구 화성시장 면담 결과

날 짜 2012. 7 .5. (총 2 쪽)

## 보 도 자 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화성 팔탄에 위치한 (주)아미코트 폭발과 관련하여 화성시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성시의 책임있는 대책 요구와 부상자들에 대한 정신치료, 안전 점검의 일상화와 후속조치에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인 톨루엔에 대해 안전관리와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화성시장 면담결과

- 1) 시설기준 마련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아미코트 공장부지에 대해 동종 업종이 들어오게 할 생각이 없음
  - 2) 화성시 불법제조장을 1년에 걸쳐 조사중임. 인허가 과정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음. 합법적으로 추후 관리 이행하지 못한 것에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고민중임
  - 3) 사건 현장에서 일한 부상자 치료를 시 차원에서 돕겠음. 사고 당일날 조사를 했을 당시 별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겠음.
  - 4) 주변 안전점검 관련하여, 폭발 공장 철거시 안전진단은 받은 상태, 뒤쪽의 옹벽으로 인해 피해가 많이 줄었음. 시에서 확인한 결과 주변 공장들 안전은 문제 없을꺼라 판단함.
  - 5) 공단 안전시스템 점검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담당 부서 배치해 문제를 해결하겠음.
  - 6) 유가족 보상 관련해서 시가 보상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음.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 해주는 것이 전부임.
  - 7) 톨루엔이라는 화학물질 사용에 주의하겠음.
- 1)~7)번까지를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해 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4. 추후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와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와 대책위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5. 대책위는 시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성시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수원지방노동청에 화성시 노동조건과 노동자관리, 안전점검 관련한 책임을 묻고, 이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 화성팔탄 폭발사고처럼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노동자들이 안전한 조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대책위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7.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팔탄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장 면담 요청서**

□ 발신 : 화성 팔탄 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  
- 담당: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상임활동가  
(010-5608-0288 / 031-213-2105 / humandasan@gmail.com)

□ 수신 :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장  
- 참고 :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화성시 관할 담당 공무원

1.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사회적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나름 애쓰고 있는 경기고용노동지청이 중대재해는 물론이고 일하는 이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보호와 예방 조치를 누릴 수 있도록 선도적인 책임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18일 화성시 팔탄면 울암리에 위치한 (주)아미코트라는 회사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폭발 사건으로 인하여 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폭발 직후 화성시는 대책본부를 마련해 사건을 수습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성시의 사건 수습은 폭발사고의 후속조치 중심에 그친 것이고, 왜 폭발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와, 이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이후의 과제로 남겨진 상황입니다. 폭발사고가 난 (주)아미코트가 있는 화성시 지역은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관할입니다. 이번 폭발사고는 물론이고 중대재해와 노동 안전보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청이 무엇을 했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2008년 9월 9일에도 똑같은 공장 부지에서 똑같은 폭발사고가 일어나 3명이 사망하였고, 3명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2번의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안전 점검 부재의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장 안전시설이 미흡했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사업주의 책임문제도 있겠지만, 해당사업장은 물론이고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관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 안전보건 대책과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

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판단합니다.

5.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는 금번 폭발사고가 같은 공장에서 유사 원인에 의한 폭발사고로 다치고 죽는 일이 재발된 것으로서 끔찍한 재앙이자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폭발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중대재해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는 물론이고 노동 안전보건 실태와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해 총체적인 판단과 대책마련에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이 혼신의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청 관할 지역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화성 팔탄 폭발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책임있게 임하는 것을 통해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일터를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6.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노동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하는 것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래야 단 한사람의 안전과 생명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는 고용노동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 이라 믿습니다. 보고에 그치거나 생색내기식의 사후처리에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래야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 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이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경기지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경기고용노동지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 면담 내용 : 화성 팔탄 폭발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 면담 일시 및 장소 : 2012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 반, 수원지청
- 면담 참여자 : 화성노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각 1명씩 총 5명(화성시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조정이 가능할 경우 참여 예정)

2012년 7월 3일

자료 3-2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면담요청 거부 관련 노동청 공문

수 신 고용 노동부 경기지청 산재 지도과 및 근로개선2과, 지청장실  
발 신 **다산인권센터** (담당 : 안은정 010-5608-0288 / 031-213-2105 humandasn@gmail.com )  
제 목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면담요청 거부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날 짜 2012. 7 .11. (총 2 쪽)

## 공 문

1. 귀 단체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2. 지난 7월 3일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화성팔탄공단 폭발 사고 건과 관련하여 7월 10일에 면담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 하지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 면담 요구를 1) 국과수 수사가 진행중이고, 2) 개별사건 관련하여 면담을 하기가 애매하다, 3) 경기지청에서는 안전보건공단, 화성시청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 이 사건 관련한 경기지청의 대응에 관해 궁금한 점은 그 교육에 와서 들어라. 며 사실상 대책위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면담 거부에 따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답변을 공문을 보내달라는 대책위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4.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는 이미 예견 된 사고였습니다. 4년전에도 똑같은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안전대책을 마련해 나가지 못한 채 올해 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해당 관청은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보여준 태도는 ‘개별사건이기 때문에 면담이 애매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죽은 것이 한 사업장 사업주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만 취급하려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태도가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안전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점검과 노동환경을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한 인재입니다. 이 사건을 개별 사업주만의 문제로만 판단하려는 노동청의 모습은 과연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5. 또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달라는 대책위의 요구에 내부 문서라 공개

하기 어려우니 화성시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주 교육에 와서 내용을 들으라는 답변은 행정관청이 민원인의 요구에 권위적으로 대응하며, 사건을 민원인과 함께 해결하는 태도가 아니라 행정관청에서만 처리하고, 축소시키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문제가 있으면 나누며,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행정관청의 권위적인 모습을 보면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과연 이 사건의 해결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6. 이에 화성팔단공단 폭발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는 대책위의 면담요구에 불응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면담 불응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7. 사과와 더불어 대책위와의 면담을 재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진행하는 7월 18일 교육을 대책위도 참관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대응이 어떠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민원인과 이 사건의 해결을 하려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진정성을 보고 싶습니다. 7월 18일~25일 사이에 면담을 재추진해주길 요청합니다.

8.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성실한 답변 요구와 면담 재요청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공문으로 처리해 줄 것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자료 3-3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면담요청 거부와 면담거부 공문의 내용 불일치에 대한 해명 요구와 재면담 추진 요청 공문.

수 신 고용 노동부 경기지청 산재 지도과 및 근로개선2과, 지청장실

발 신 다산인권센터 (담당 : 안은정 010-5608-0288 / 031-213-2105 humandasn@gmail.com )

제 목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면담요청 거부와 산재지도과 담 당공무원과 면담거부 공문의 내용 불일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재면담 추진을 요청합니다.

날 짜 2012. 7 .23. (총 2 쪽)

## 공 문

1. 귀 단체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2. 지난 7월 3일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화성팔탄공단 폭발 사고 건과 관련하여 7월 10일에 면담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면담 거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7월 11일 이에 관련한 이의제기와 더불어 면담을 재요청 했습니다. 첫 면담 거부를 전화상으로 먼저 통보를 받고 이후에 면담 거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3. 7월 10일 면담 추진 당시 산재지도과 화성담당 이상훈님으로부터 구두로 통보 받은 내용은 1) 국과수 수사가 진행중이고, 2)개별사건은 면담하기 애매하다, 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안전 보건 공단, 화성시청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 이 사건 관련한 경기지청의 대응에 관해 궁금한 점은 그 교육에 와서 들어라. 라는 사실상 면담 거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면담거부 내용을 공문을 통해 발송해달라는 대책위의 요구에 뒤늦게 면담거부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4. 뒤늦게 온 면담거부 내용을 보면 산재지도과 이상훈님이 구두로 면담 거부를 이야기 한 것과 공문상의 내용은 1)국과수 수사가 진행중이라 면담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면담거부 공문에 보면 개별사건은 담당하기 애매하다고 구두로 말한 내용은 일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이후 대응은 7월 18일 화성시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주 간담회에 와서 들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에서 화성시 교육에 참관한 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담당자는 한명도 보지 못했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5. 대책위는 이 면담거부 공문과 산재지도과 담당자의 이야기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공문 내용과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이 불일치 한 점, 고용노동부의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입장을 듣지 못한 점등, 과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화성팔탄 폭발 사고의 해결의지가 있는 곳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원인의 요청에 말과 공문이 다르고,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민원인의 요청에 앞뒤가 안맞는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과연 팔탄 폭발 사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그저 개별사업장의 폭발 사고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폭발사고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걱정스럽습니다. 관할 지역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났으면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하고, 이후 안전점검,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이 한달이 지난 지금에도 고용노동부는 국과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그저 행정적으로 처리만 하려는 것인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과연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고민이 있는 곳인지,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의심스럽습니다.

6.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면담요청 거부 공문에 따르면 국과수 수사결과와 수원지청 조사결과등을 토대로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할 사업장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의 결과에 이르기 이전에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원인과 주변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건은 원인미상의 화학물질의 작용으로 인해 폭발을 한 것이지만, 그 보다 먼저 사업장의 안전점검 시스템과 안전불감증에서 온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기에 먼저 유해 사업장을 먼저 확인하고, 주변 안전점검 시스템을 확보하고,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공문 내용에 나와있듯 국과수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만을 따진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뒤처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당 한 사업장만의 문제, 해당 사업주만의 문제로만 이 사건을 축소해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태도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과 지역주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후 약방문 식의 행정 처리로 노동자들의 죽음과 안전에 대해서 방치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7. 이에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는 고용노동부와 이 사건 해결을 위한 면담을 재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과 공문이 일치하지 못한 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대책위의 요구에 또 불성실한 태도, 담당 공무원과 공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시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태도를 규탄할 예정입니다.

8.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성실한 답변 요구와 면담 재요청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공문으로 처리해 줄 것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 2012년 8월 8일 고용노동부 중부지청 면담결과

: 55개 사업장 결과요청 건, 진상조사 보고서 자료 달라는 것, 유사 업종으로 확대할 필요성, 화성지역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 실태조사 요청. 지청장, 산재예방과장, 담당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

지청에서는 사업주의 인식전환문제, 인식재고와 효율을 높ی겠다. 사후관리 처벌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함. 형식적이고 파편적인 사후적 대응은 심각한 문제이고, 진상보고를 할때 폭발 문제 뿐 아니라 화성지역 노동실태 전반을 아울러보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났으며 좋겠다고 이야기 함. 대책위 보고서가 작성되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고 제안.

지청관할 7만7천개 사업장 중 350개정도만 1년에 검토할 수 있음. 산업안전감독관 1명당 70개 이상 하기 어렵다는 노동청의 의견.

지청은 사업주에 코드를 맞춰서 생각하고 있음. 안심일터 만들기, 이주노동자 대책을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함. 사업기획을 하고, 운영할 때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와 의견 나누면 유의미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음. 화성지역 업종별 사망 사고계획과 진상조사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줄 수 없다고 함.

결론적으로 노동청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예방차원의 대책보다는 사업주 처벌에 초점을 맞춘 대응, 전반적 노동실태조사, 예방대책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자체의 부족을 확인함.